

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. 8. 16. 제출되어 8. 2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1. 제안이유

-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해왔던 “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”의 저조한 운영 실적을 감안, 안전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탄력적·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설위원회로 관리되고 있는 “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”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.(안 제9조제1항)
- 법제처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.

3. 검토의견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18년도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,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·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 방지와 지자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
-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해 오던 “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”가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빈번

하게 상설위원회를 운영할 만큼의 심의안건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, 2년 이상 미 운영되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대상으로, 법령상 설치의무 위원회로 폐지가 어려운 경우 비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탄력적·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,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